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62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환경위원회 기능, 구성,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,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행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
나. 환경위원회 기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설(안 제2조)

5. 구 환경상 심사

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

7.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

다. 위원회 구성과 임기(안 제3조)

(1) 환경위원회 구성 인원을 “25인”에서 “15명”으로 함

(2) 위원장을 “위촉직”에서 “주민생활국장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을 “구 소속 4급 이상”에서 “구 소속 5급 이상”으로 변경

(3) 임기 사항 중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

라. 분과위원회 폐지(제5조 삭제)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(안 전반)

3. 개정근거

- 1) 201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
- 환경과 - 15009(2010. 8. 4)

4. 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관계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22조(주민참여 등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(1) 입법예고 : 2010. 8. 12. ~ 9. 1.(제출된 의견 없음)
 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2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며, “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회”는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기능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제1호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제4호 중 “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”을 “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”로 하고,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며,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구 환경상 심사
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
7.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 하며, “25인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,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하되”를 “하며”로 하고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를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보궐위원”을 “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,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분과위원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은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2항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해당하는 때”를 “해당하는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부득이 한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품위손상·장기불참”을 “품위손상, 장기불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,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여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”를 “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”로, “인”을 “명”으로, “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회무와 회의록의 정리·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.”를 “환경과장이 된다.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중 “활동 및 결과조치”를 “활동과 결과조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”를 “사항을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환경교육”을 “환경 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”을 “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위원에게는”으로,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 중 “사항외”를 “사항 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</u> <u>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</u> <u>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</u>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</u>의 환경보전시책 수립·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설치하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……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</u>」 제22조에 따라 …… ……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…… …… ……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</u> …… ……</p>
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</u>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 활동</p> <p><신 설> <신 설> <신 설></p> <p>5. 기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라 한다)</u>이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등</p>	<p>제2조(기능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 …… 사항 ……</p> <p>1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</u> ……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</u> ……</p> <p>5. <u>구 환경상 심사</u></p> <p>6. <u>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그 밖에 ……</p>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 및 부위원장 2인</u>을 포함하여 <u>2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…… <u>1명과 부위원장 1명</u>을 포함한 <u>15명</u> ……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,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③ 하며, 한 차례만 연임</p> <p>④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..... ...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.....</p>
<p>제4조(위원장과 분과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2명의 분과위원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</p>	<p>제4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 <삭 제></p> <p>① 업무....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<삭 제></p>
<p>제5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에 행정분과위원회,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행정분과위원회 : 주요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건의, 환경보전에 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</p> <p>2. 실천분과위원회 : 환경교육·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 전개,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. 위원이 품위손상·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(생략) <p>제7조(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·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간사)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회무와 회의록의 정리·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제6조(위원의 해촉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.... 1. 그 밖의 부득이 한 2. 품위손상, 장기불참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④ ⑤ 위원회..... </p> <p>제8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1명..... 환경과장이 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의 활동 및 결과조치) ① 위원회는 스스로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,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환경교육·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2. 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3. (생략) 4. 기타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<p>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수당)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<u>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단서 조항 신설></p> <p>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조치) ① 사항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환경 교육..... 2. 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<p>② 제1항에 따라</p> <p>제10조(수당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</p> <p>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1조(운영세칙) 사항 외.....</p>